

#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특별조사 결과

## □ 조사 개요

- 조사배경 :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의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이하 “도쿄지사”)의 공직기강 점검 결과, 차량관리 및 예산집행 부 적정에 대한 점검사실 통보(“16.3.8.)
- 조사자 : ○○○ 사무관, ●●● 주무관
- 조사중점 : 도쿄지사 차량관리 및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 등

## □ 특별조사 결과

### ○ 휴일행사수당 경비지급 부적정

- 2015. 9.26(토)~27(일)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투어리즘 EXPO 저팬 한국관 운영」 행사에 도쿄지사 직원이 휴일근무를 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휴일행사수당으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른 67,045엔을 △△△ 도쿄지사장 외 4명이 지급받았음.
- △△△과 ○○○을 포함한 4명은 기획관축 업무협의 명목으로 ‘15.9.26일 토요일 중식비용으로 5,832엔을 지출하였으며, 상기 2인에게 기 지급된 휴일행사수당에 포함된 중식비용 28달러(14달러×2인)가 중복하여 지급된 사실이 있음.

### ○ 임차사택 보험료 경비지급 부적정

- 도쿄지사 ○○○은 지사장 △△△ 외 직원 4인의 임차사택 화재보험료를 2년간 약 2만엔씩 총10만엔을 회사공금으로 지출한 사실을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 시 확인하였음.
- 한국관광공사 「해외사택관리요령」 제7조는 사택관리에 드는 경비 부담으로 공사부담 항목과 입주자 부담 항목을 구분하였으며 동 요령의 세부사항을 정한 「해외지사 주재원 임차사택 관리지침」 제14조는 임차사택의 보험료에 대하여 입주 주재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재국의 관련법규 및 공동주택 관리 관례 등에 의거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보험료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쿄지사는 상기 보험료 2년 기준 143천엔을 지급하였음.

- 도쿄지사에서는 동 보험료 지출 중 △△△ 지사장은 공용사택으로 해외사택관리요령 제7조에 따라 공사부담이 타당하다 하고, △△△ 이외 4명의 임차사택의 경우 해외사택관리요령 제7조와 임차사택 관리 지침 제14조에 따라 주재국의 관련 법규 및 공동 주택 관리 관례 등에 의거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보험료라 하며 그 근거로 사택계약서와 일본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전문가 질의응답 자료를 제시.

### ○ 공용차량 관리미흡

- 도쿄지사 ○○○은 도쿄지사 에서 운영 중인 2대의 공용차량(2400cc, 2500cc)의 운행목적, 주행거리, 유류소모량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인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유류비 집행 또한 주유소의 주유확인서를 근거로 입금함에 따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류를 소모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 시 확인하였음.
- 도쿄지사는 「해외지사 관리지침」 제32조(차량운행)과 제33조(차량관리) 규정에 따라 차량의 운행 및 유지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는 국내와 달리 해외지사의 경우 차량관리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해외지사 관리지침」의 일부조항(제31조 내지 제34조)으로 차량운행과 차량관리 등에 대하여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차량운행관리(차량기록부 또는 차량관리부)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해외지사 공용차량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

### □ 조치할 사항

-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지사 공용차량 운행 시 사용목적, 목적지, 사용자, 운행거리, 유류비 집행 등의 기록을 통해 사적사용이 통제될 수 있도록 「가칭 해외지사 차량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 해외지사 임차사택의 화재보험료 경비부담에 대한 해외지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사부담과 개인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해외지사 주재원 임차사택 관리지침」에 반영하고, 동 기준에 따라 도쿄지사 보험료 공사부담분에 대한 환수여부를 조치 촉구
-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장에 대해 휴일근무수당 내역에 중복집행 된 28불 (31천원 상당)을 환수조치 하도록 하고, 지사 공용차량 관리 소홀에 대하여 기관주의 촉구